

#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력산업 규제체계 중립성·전문성 확보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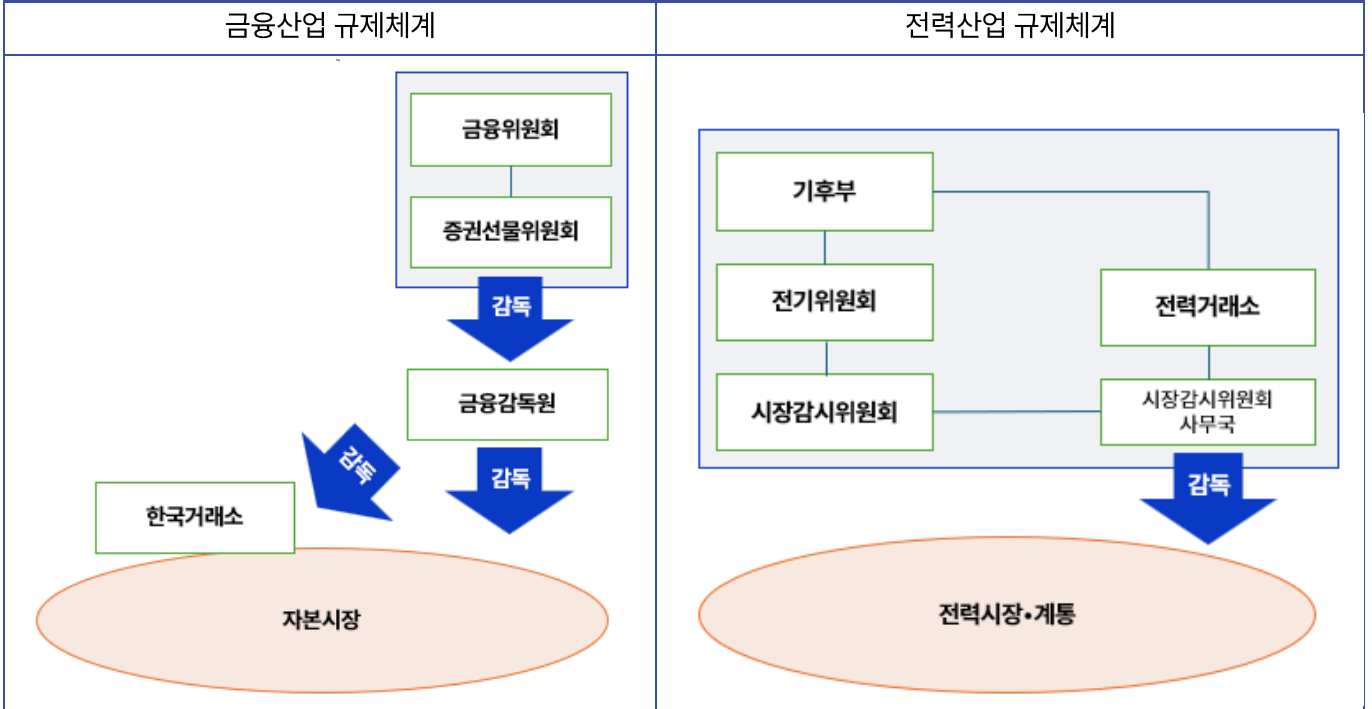
## 참고

기후솔루션(Solutions for Our Climate; SFOC)은 독립적인 비영리법인으로서 특정 기업체, 국가, 공공기관, 정당, 이익단체, 개인 등을 대변하지 않으며, 투자 자문 또는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본 보고서의 모든 내용은 발간 시점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검증 과정을 거쳤으나 정보의 정확성, 완결성, 적시성에 대해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후솔루션은 이 보고서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직·간접적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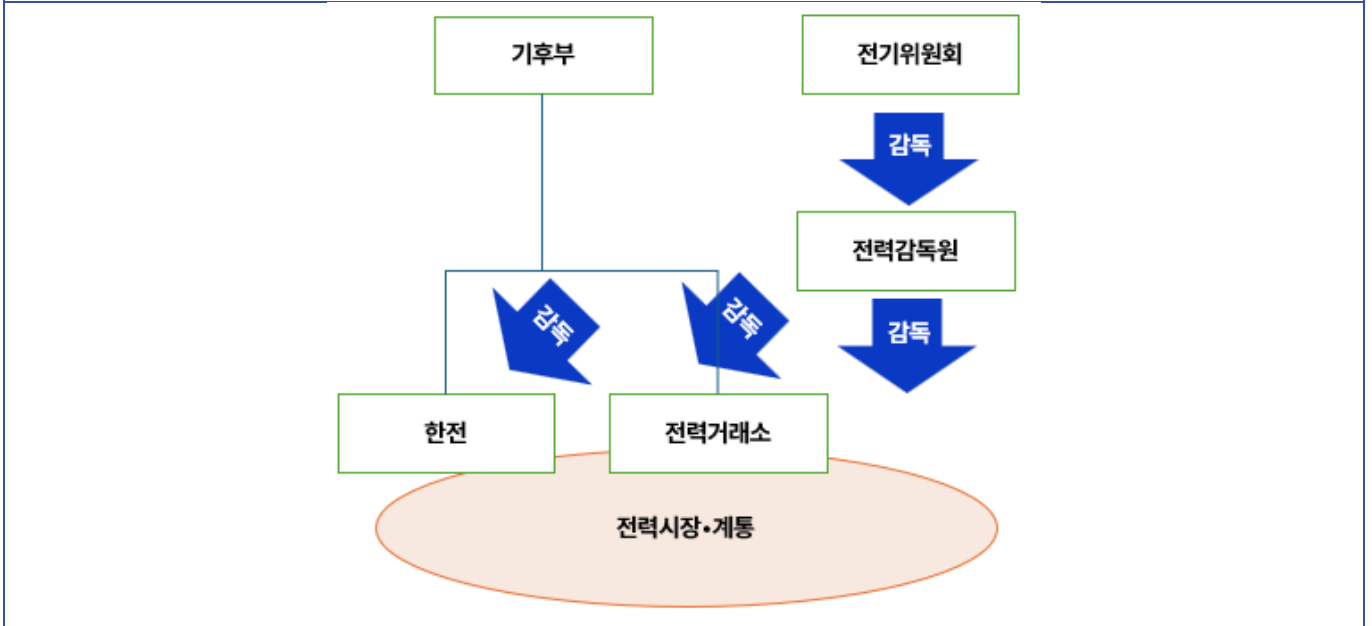
## · 요약

- 배경 및 문제의식
  - 에너지 전환과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인해 전력산업 규제체계 전반의 근본적 재검토 필요
  - 재생에너지 확대는 단순한 발전원 변화를 넘어 분산형 전원 증가, 계통 운영 복잡성 증대, 신규 전기사업 유형 등장 등 구조적 전환 수반
  - 현행 규제체계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내재적 이해상충**을 보유한 한전·전력거래소, 그리고 이들에 의존하는 기후부 중심으로 운영되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효과적 대응 곤란
- 분석 방법
  - 구조적 전환을 선제적으로 경험한 **금융산업 규제체계** 분석 및 전력산업 적용 시사점 도출
  - 금융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① 최고감독기관(금융위원회)과 중간감독기관(금융감독원·증권선물위원회) 간 기능 분리, ②합의제 의사결정 구조 도입, ③ 독립 법인 형태의 감독기관 설치를 통해 중립성·전문성 제고
- 주요 제안
  - (독립규제체계 수립) 전기위원회를 전력산업 전반의 최종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합의제 최고 감독기관으로 격상, 전력감독원 신설**하여 조사·검사·제재 기능 전담
  - (임명 절차 개선, 신분 보장 및 겸직 제한) 전기위원회 위원 임명 절차 개선을 통해 **기후부로부터 중립성 확보**, 상임위원 중심 운영체계 도입으로 상시적·전문적 의사결정 체계 구축. 임기 보장, 정치활동·겸직 금지, 연임 제한 등을 통해 특정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중립성 제도적 담보**
  - (인력 확충) 규제기관의 실질적 기능 수행을 위한 **충분한 규모의 전문 인력 확보**
- 결론
  - 전통적 이해관계에 종속된 규제체계를 탈피하여 **중립성·전문성을 갖춘 규제기관 중심 체계로의 전환 필요**
  -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효율적인 시장·계통 운영, 소비자 후생 제고 실현
  - 에너지 안보·탄소중립이라는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금융산업 및 전력산업 규제체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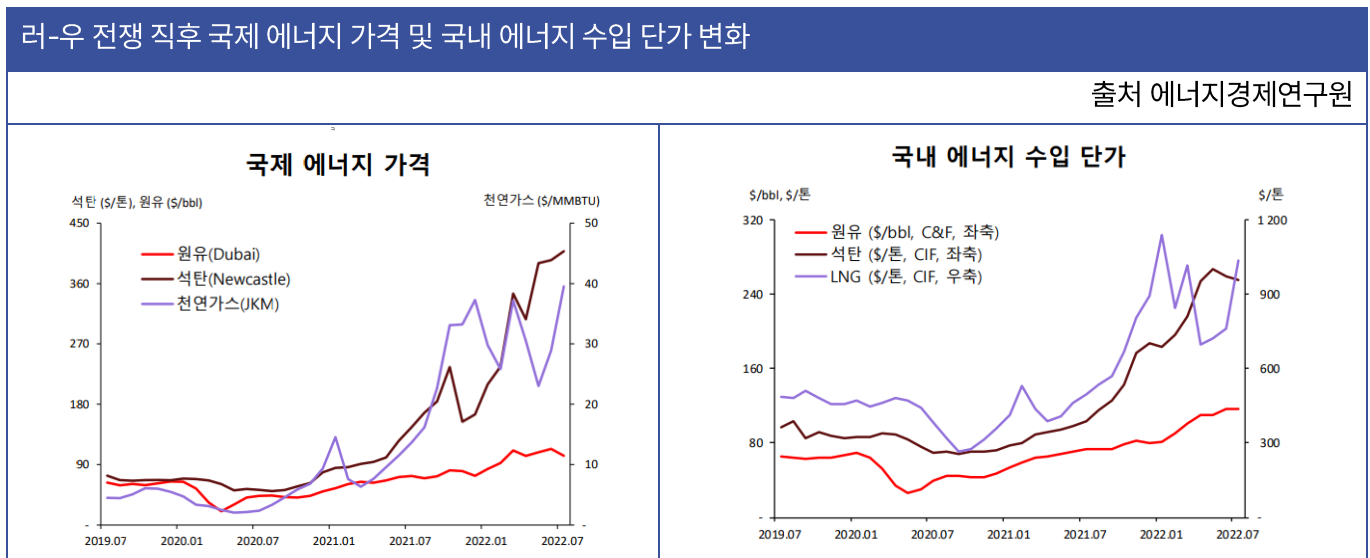
전력산업 규제체계 개선안



# I. 전력산업의 변화와 규제체계 선진화 필요성

## 에너지 안보와 재생에너지 전환의 필요성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기후변화 대응을 주된 동인으로 추진되었으나, 러-우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공급망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필수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93%를 상회하며, 화석연료는 사실상 거의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sup>1</sup> 이는 국제 정세에 따라 에너지 수입량과 가격의 변동이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2022년 러-우 전쟁을 통해 가시화되었고, 2026년 이란 전쟁으로 다시 한번 점화되었다. 러-우 전쟁 발발 당시 국제 에너지 가격은 약 1.8 배 증가하였으며, 국내 에너지 수입단가 역시 약 1.7 배 증가하였다.<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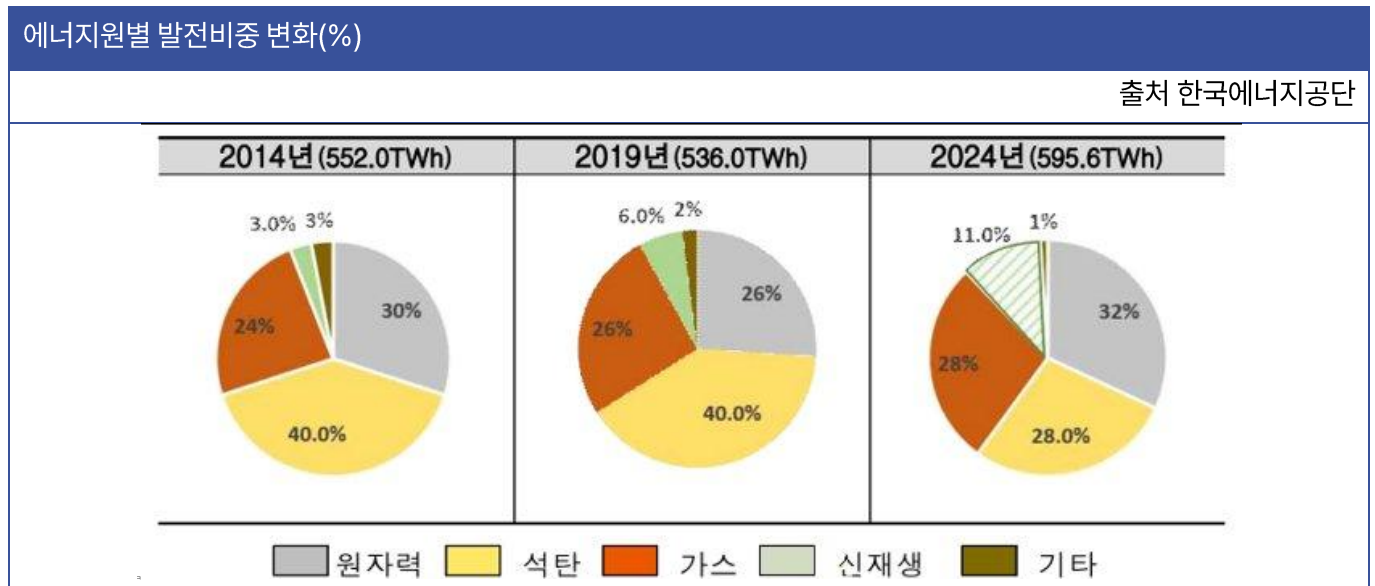


에너지 가격 급등은 수입물가와 생활물가에까지 연쇄 영향을 미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전쟁 이후인 2022년 3월 수입물가지수는 전월보다 7.3% 급등하여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2022년 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5.1%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sup>3</sup> 전 세계 석유의 약 3분의 1과 LNG의 약 5분의 1이 통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조치를 동반했던 2026년 2월 이란 전쟁의 여파도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sup>4</sup>

한편, 산업의 근간인 전기 생산은 여전히 화력발전이 크게 의존하고 있다. 전원별 발전비중을 살펴보면 석탄과 LNG가 과반을 차지한다.<sup>5</sup> 이러한 구조에서는 국제 연료 가격 급등이 곧바로 국내 물가와 산업 경쟁력에 전이될 수밖에 없다. 반면

<sup>1</sup> 에너지경제연구원, "2025·12 에너지통계월보", 2025. 12.  
<sup>2</sup> 2021년과 2022년 3월 간 원유, 석탄, 천연가스의 가격 변화를 평균하여 계산한 값.  
 에너지경제연구원, "EU의 對러시아 가스의존도 감축 정책과 세계 가스시장 전망", 에너지 브리프, 2022. 8.  
<sup>3</sup> 주혜린, "(러-우크라 전쟁 1년)전쟁발 인플레이션, 수입물가 '경충'...소비 둔화 '직격탄'", 뉴스토마토, 2023. 2. 20.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77869>  
<sup>4</sup> 딜로이트, "미국-이란 전쟁과 에너지 위기 가능성", 2026. 3.  
<https://www.deloitte.com/kr/ko/our-thinking/global-economic-review/ger-2026-03-1st.html>  
<sup>5</sup> 에너지공단, "KEA 에너지 이슈 브리핑 제267호", 2025. 6. 2.

재생에너지는 연료비가 없어 외부 가격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평가된다. 즉, 재생에너지로의 신속한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이 명백한 상황이다.



### 재생에너지 전환의 과제,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

대규모 발전기를 통해 일방향으로 전력을 공급하던 기존 체계는 분산형 전원의 참여로 다양한 전기사업 유형의 등장과 유통체계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분산형 전원을 집합하여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 이를 인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제도 등이 도입되었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계통 접속을 위한 배전설비 구축·운영에 관한 별도의 계획도 수립되었다. 전통적 전기사업 유형인 발전·송전·배전·판매사업으로는 포섭할 수 없는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등 전기신사업 유형이 신설되었고, 발전설비 수는 19 만 개에 이른다(2025년 기준).<sup>6</sup>

한편, 발전설비 증가 속도와 비교했을 때 이를 계통에 수용하기 위한 송배전설비 구축 속도는 현저히 뒤쳐지고 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는 495% 증가한 반면, 송전설비와 배전설비는 각 14%, 22% 증가하는데 그쳤다.<sup>7</sup> 제한된 계통을 이미 존재하는 대규모 전통적 발전기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재생에너지 수용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역 간 전력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상황에서 융통선로가 포화되어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풍부한 지역에서 신규 재생에너지 접속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sup>8</sup> 계통에 수용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연성 전원의 부족, 실시간 수급 조절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운영 체계 미흡도 계통 안정성 확보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sup>9</sup>

<sup>6</sup> 한국에너지공단, 발전소 설치현황

[https://recloud.energy.or.kr/present/sub3\\_1\\_2.do](https://recloud.energy.or.kr/present/sub3_1_2.do)

<sup>7</sup> IEEFA, "Bottlenecks to renewable energy integration in South Korea", 11면, 2025. 6.

<sup>8</sup> 기후솔루션,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의 핵심, 계통 거버넌스 개선 방향", 6면, 2025. 11.

<sup>9</sup> 현대경제연구원, "환경과 산업을 함께 살리는 신에너지전력이 필요하다", 8면, 2025. 6.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력시장은 안정적 전력 공급과 효율적 가격 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특히 유연성 전원이 필요한 수준으로 신규 투자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력시장에서 해당 비용을 적정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전력시장에서 가격이 낮을 때 충전하고 높을 때 방전하여 차익을 확보하고 용량과 보조서비스<sup>10</sup> 제공을 통해 수익을 확보해야 하나, 국내 전력시장은 변동비 평가 방식으로 운영되어 시간대별 가격 차이가 충분히 발생하지 않고 보조서비스에 대한 보상 역시 제한적이다.<sup>11</sup>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가격 결정 방식이 전면 개편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전력산업에 대한 규제는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한전)와 전력거래소가 주요 이해관계자로 관여하고 있다. 전력산업을 규율하는 시장제도 설계, 계통설비 기준, 시장 및 계통운영 규정은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마련되고, 기후부의 승인을 통해 확정된다.

한편, 한전은 전통적 발전설비를 운영하는 발전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한 모회사로서 이들과 재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sup>12</sup> 동시에 유일한 망사업자로서 계통 신뢰도·전기품질 유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설비 투자와 유지·보수 의무를 부담한다.<sup>13</sup> 이러한 재무적 연결성과 계통설비 부담은, 전통적 발전원과 경쟁관계에 있으며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에 필요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유인을 약화시키는 이해상충 구조를 한전에 내재화하고 있다. 전력시장·계통 운영기관인 전력거래소 역시 이사회와 주요 위원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지 못한 채, 한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력산업에 새로운 계통·시장 체계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 발전원의 특성에 맞춰 설계되고 이들 중심으로 정책과 제도가 결정되는 기존 체계에서는, 에너지 안보와 기후위기가 요구하는 속도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체계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이해관계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중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하에서는 전력산업에 앞서 시대적 위기와 구조적 전환을 경험한 금융산업 규제체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규제기관의 선진화된 모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sup>10</sup> '보조서비스'란 실시간 수급균형을 유지하고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주파수와 전압을 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sup>11</sup> 한국개발연구원,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한 전력도매시장 구조 개선 방향", 9면, 2025. 9.

<sup>12</sup> 한전 발전자회사는 전체 발전량의 68%를 공급하며, 이들의 전원별 발전비중 가운데 전통적 발전원(화력 및 원자력)이 95%를 차지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0.3%에 그친다(2024년 기준, 전력통계정보시스템).

<sup>13</sup> 「전기사업법」 제27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39조 제1항

## II. 금융산업 규제체계의 중립성·전문성 확보 방안

### 1. 금융산업 규제체계의 변화

1980년대 이후 금융의 자유화와 탈규제화로 금융회사의 업무가 다양해지고 겸업이 확대되었다. 은행·증권·보험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진 신종 금융거래와 파생상품이 개발되면서, 업권별로 분리된 기존 규제체계로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다른 산업에 비해 뒤처진다는 인식도 확산되었다.<sup>14</sup>

이에 1997년 정부는 금융 부문 개혁을 위해 자문기구인 금융개혁위원회를 설립하였다.<sup>15</sup> 같은 해 발생한 한보 사태<sup>16</sup>를 계기로 여러 대기업이 부실화되면서, 금융개혁위원회는 거시경제정책 및 통화신용정책으로부터 독립된 금융감독기관을 설립할 것을 단기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어 연말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IMF의 개선 권고가 이뤄졌고, 1998년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가 설치되었다.<sup>17</sup>

당시 금융개혁위원회는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으로 ① 감독행정이 정부 주도의 금융정책 수행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정부의 의사결정이 감독행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② 권한의 집중으로 자율규제기관의 기능이 제한되고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 감독 역량이 충분히 개발되지 못한다는 점을 꼽았다.<sup>18</sup>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체계를 일원화하여 최고감독기관에 규제·감독권을 포괄적으로 부여하고, 동시에 권한 집중에 대비하여 견제·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고감독기관과 그 지시·위임을 받아 검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중간감독기관 사이에 기능상 구분을 설정할 것을 제시했다.<sup>19</sup>

그 결과 최고감독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중간감독기관으로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설치되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거래소 시장에 참여하는 상장기업, 투자자, 중개회사를 대상으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시장규칙제정권을 보유한 시장규율자이자 불공정거래방지 등 특수심리·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감독·검사권을 위임받아 전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설립되었다.<sup>20</sup>

<sup>14</sup>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20년사”, 52면, 2019.

<sup>15</sup> 「금융개혁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15259호로 1997. 1. 22. 제정되고, 1997. 1. 22. 시행)

제1조 (목적) 금융산업과 금융관행을 이용자 위주로 개혁하고 선진각국의 금융개혁추세하에서 우리 금융산업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총체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심의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금융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sup>16</sup> 한보사태는 한보그룹이 정치권·금융권에 대한 광범위한 로비와 특혜 대출, 부실경영으로 1997년 부도에 이른 대형 정경유착 비리 사건이다. 이 부도로 은행 부실과 대기업 연쇄 도산이 심화되며 한국 경제 전반의 불안이 크게 증폭되었다. 그 결과 같은 해 말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는 데 중대한 기여를 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sup>17</sup>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20년사”, 52-54면, 2019.

<sup>18</sup> 금융개혁위원회, “금융개혁위원회 최종보고서”, 541면, 1997. 12.

<sup>19</sup> 금융개혁위원회, “금융개혁위원회 최종보고서”, 543면 이하, 1997. 12.

<sup>20</sup> 금융개혁위원회, “금융개혁위원회 최종보고서”, 553면, 1997. 12.

이후 2003년 카드사태<sup>21</sup>를 계기로 재정경제부(금융정책)-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정책)-금융감독원(금융감독집행)의 3 단계 규제체계가 야기하는 업무의 분산·중첩, 신속한 대응 미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 단계 규제체계로의 개편이 이뤄졌다. 2008년 재정경제부의 국내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감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가 신설되었고, 기획재정부는 국제금융정책만 주관하게 되었다.<sup>22</sup>

이처럼 금융산업 규제체계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한 효율적 감독을 도모하는 한편, 권한 집중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sup>21</sup> 2003년 카드사태는 외환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신용카드 규제를 완화하고 사용을 과도하게 장려한 결과, 소득·신용과 무관한 과도한 카드 발급과 현금서비스 남용이 누적되다 발발한 위기다. 이로 인해 카드 연체율이 급등하고 여러 카드사가 부도 위기에 몰렸으며, 수백만 명에 이르는 신용 불량자가 발생해 가계와 내수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다.

<sup>22</sup>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12면, 2017.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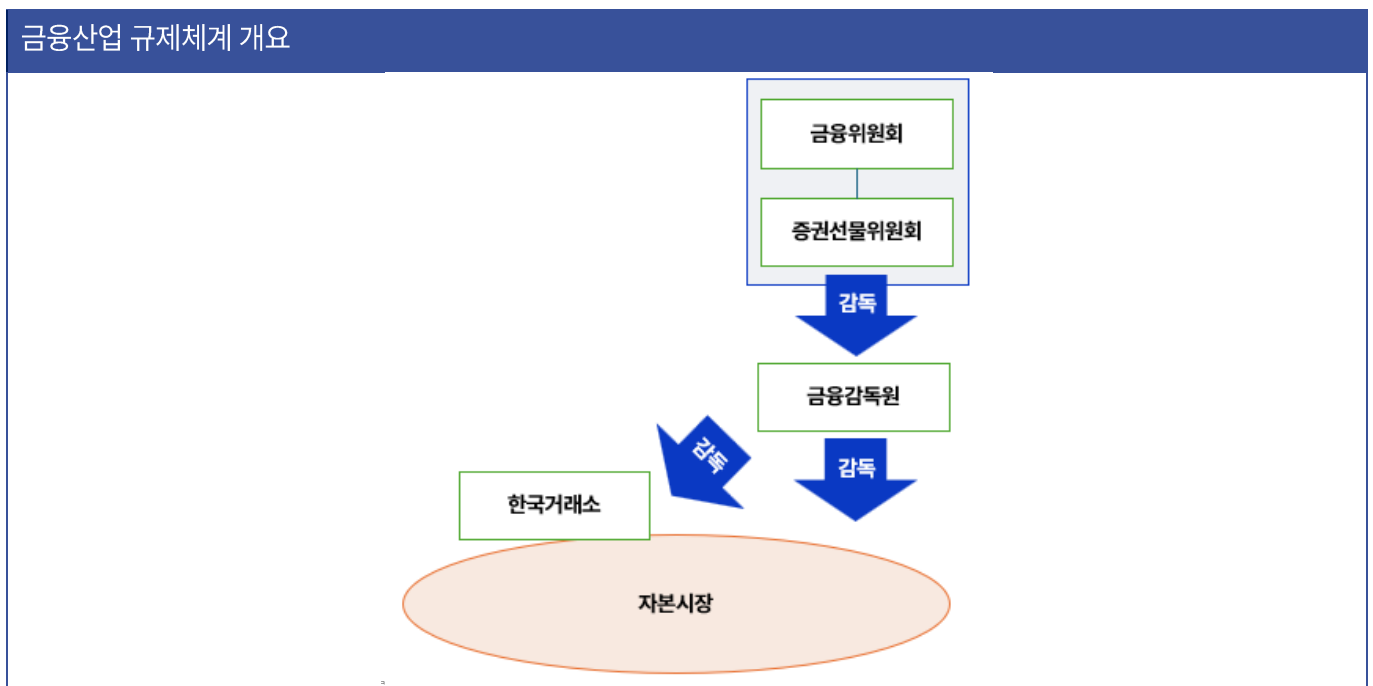
2026년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을 담당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경제 기능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로 분리되었다. 이는 기획재정부에 광범위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었고, 예산은 중장기 국가전략의 관점에서 별도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직 개편이었다. 그러나 금융감독체계는 기존과 같이 금융위원회를 최고감독기관으로 하는 구조가 유지되었다.

## 2. 금융산업 규제체계 현황

### 금융산업 규제체계 개요

금융산업 규제체계는 금융위원회를 최상위 기관으로 두고,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감독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자본시장 운영기관인 한국거래소 산하 시장감시위원회에서도 시장 및 회원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감독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면, 한국거래소가 위법사항을 발견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인지단계), 금융위원회로부터 감독업무 위탁을 받은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실시하며(조사단계),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거쳐 중대 조치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그 외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취한다(심의·조치단계). 이하에서는 각 기관의 법적 성격, 권한 및 역할, 구성 및 임원 선임절차에 대해 살펴본다.



#### 1) 금융위원회

##### 법적 성격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자본시장 감독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며, 관련된 금융위원회 소관 주요사항을 사전에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와 기업회계 기준 및 회계관리에 관한 업무도 수행한다.<sup>23</sup>

<sup>23</sup> 「금융위원회법」 제19조

## 권한 및 역할

금융위원회는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 감독·검사·제재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의 설립 인·허가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의 관리·감독·감시에 관한 사항,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관련 법령·규정의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 사무로 두고 있다.<sup>24</sup>

금융감독 업무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 결과의 처리 및 제재 등에 대해 정하고 있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제정 및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매년 당해 연도 검사 업무의 기본 방향, 검사 대상 금융기관, 검사의 목적과 범위 등을 포함한 **검사 계획**과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sup>25</sup> 금융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은 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의 업무·재산·회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sup>26</sup>

또한 금융감독원이 검사 결과에 대해 금융기관 또는 임직원에 대해 **중한 제재 조치**<sup>27</sup>를 취해야 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건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에 이를 건의하도록 정하고 있다.<sup>28</sup> 즉,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수행하고, 금융위원회는 이를 보고 받고 중한 제재 조치 여부를 심사하며,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 구성 및 임원 선임절차

금융위원회는 위원장 1 명과 부위원장 1 명을 포함한 9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에 증권선물위원회와 사무처를 두고 있다. 사무처는 행정인사과, 금융소비자국, 금융정책국, 금융산업국, 자본시장국 등으로 이뤄져 있다.<sup>29</sup> 2024년 말 기준 현원은 381 명이다.<sup>30</sup>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친다. 7 명의 위원은 1) 재정경제부 차관, 2) 금융감독원 원장, 3) 예금보험공사 사장, 4) 한국은행 부총재, 그리고 5) 위원장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금융 전문가 2 인과 6)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 1 인으로 구성되어 있다.<sup>31</sup>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이며, 위원장 추천 금융 전문가는 공무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는 비상임위원이다. 이들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3 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임명직 위원은 정치활동과 겸직이 금지되고, 법에서 정하는 사유 외에는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도록 신분이 보장된다.<sup>32</sup>

<sup>24</sup> 「금융위원회법」 제17조

<sup>25</sup>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조, 제8조, 제13조

<sup>26</sup> 「금융위원회법」 제58조, 제60조, 제61조

<sup>27</sup> 금융기관에 대한 중한 제재 조치에는 영업 인·허가나 등록의 취소, 영업 정지 등이 있으며,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및 업무집행 정지 등, 직원에 대해서는 면직 등이 있다.

<sup>28</sup>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sup>29</sup>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sup>30</sup> 인사혁신처, “2024년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2025. 6.

<sup>31</sup> 「금융위원회법」 제4조

<sup>32</sup> 「금융위원회법」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2) 증권선물위원회

### 법적 성격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자본시장 감독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며, 관련된 금융위원회 소관 주요사항을 사전에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와 기업회계 기준 및 회계관리에 관한 업무도 수행한다.<sup>33</sup>

### 권한 및 역할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 관련 사안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sup>34</sup>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증권선물위원회가 법률상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대해 지시·감독을 하거나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sup>35</sup>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내부자 거래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관해 법률·명령·처분 위반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 혐의자 및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sup>36</sup>

아울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직접 조사를 수행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증권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조사 및 제재 조치(중대한 조치를 제외)를 할 권한을 가진다.<sup>37</sup> 나아가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의 절차와 기준을 정하거나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sup>38</sup>

### 구성 및 임원 선임절차

증권선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에 자본시장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사항,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사항 등을 심의하는 자문기구로서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sup>39</sup>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며(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명은 상임위원이 된다. 위원은 1) 금융·증권·파생상품·회계 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 급 이상의 공무원

<sup>33</sup> 「금융위원회법」 제19조

<sup>34</sup> 「금융위원회법」 제61조

<sup>35</sup> 「자본시장법」 제440조

<sup>36</sup> 「자본시장법」 제426조

<sup>37</sup> 「자본시장법」 제426조, 제427조, 제438조 제2항, 제429조의2

<sup>38</sup> 「자본시장법」 제439조

<sup>39</sup>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1조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 2) 법률학·경제학·경영학·회계학을 전공하고 대학·공인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있었던 자, 3) 그 밖에 금융·증권·파생상품·회계 분야에 관한 전문성 있는 자 중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 임명직 위원과 같이 정치활동과 겸직 금지 및 신분보장이 적용된다.<sup>40</sup>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위원장이 된다. 그 외 위원은 1)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또는 자본시장조사 업무 담당자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2)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담당관, 3) 금융감독원 공시·조사 담당 부원장보, 4) 금융관련법령 또는 증권·선물에 관한 전문성 있는 자 중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5명으로 이뤄져 있다. 위촉위원 5명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sup>41</sup>

### 3) 금융감독원

#### 법적 성격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sup>42</sup>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로 설치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특정한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정부 조직이 아닌 독립 법인으로 법제화한 이유는 금융감독 업무가 정치적 압력 또는 행정부의 영향력에 의해 자율성을 잃지 않고, 중립적·전문적 금융감독 기능을 담보하기 위함이다.<sup>43</sup>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행정기관이 아닌 별도의 법인이며 주식이나 자본금이 없고, 운영수입 중 98.5%가 감독분담금 및 발행분담금으로 이뤄져 있다(2024년 기준).<sup>44</sup>

#### 권한 및 역할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기관과 자본시장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검사 대상은 은행,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자 전반(한국거래소 포함)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고, 검사 결과 드러난 위법 사항에 대한 제재를 집행하며, 동시에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 기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금융감독원장은 검사 대상 기관에 대해 업무·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검사 결과 대상 기관의 임직원이 법령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하거나 임원 해임 권고,

<sup>40</sup> 「금융위원회법」 제20조

<sup>41</sup>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2조

<sup>42</sup> 「금융위원회법」 제24조

<sup>43</sup> 금융감독원, "2024 연차보고서", 14면, 2025. 10.

<sup>44</sup> 금융감독원의 재원은 1) 정부의 출연금, 2) 한국은행의 출연금, 3)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 기관의 출연금 및 분담금, 4)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수입으로 충당된다(「금융위원회법」 제46조).

2024년 기준 운영수입은 한국은행 출연금 50억 원, 감독분담금 약 2,450억 원, 발행분담금 약 1,330억 원, 기타수입수수료 약 6억 원으로 이뤄져 있다(금융감독원 2024. 재무제표, 9면).

직원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위법 상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금융위원회에 위법행위 중지나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명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sup>45,46</sup>

검사·제재 절차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도별 검사계획 수립 및 금융위원회 보고, 검사·상시감시 과정에서 자료 요구, 검사 종료 후 금융위원회 보고,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 요구 및 이행상황 관리, 조치의 적정성 심사 후 금융위원회에 제재 건의 또는 직접 제재 집행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sup>47</sup>

한편,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그 제정·변경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규칙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sup>48</sup>

## 구성 및 임원 선임절차

금융감독원은 원장 산하에 기획·디지털부원장, 은행·중소금융부원장, 자본시장·회계부원장, 민생·보험처장(부원장)을 두고 있으며, 부원장 산하에 각 부원장보를, 부원장보 산하에 실과 국을 두고 있다. 2025 년 말 조직개편으로 별도의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를 두게 되었다.<sup>49</sup> 2024 년 말 기준 현원은 2,172 명에 달한다.<sup>50</sup>

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원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며, 부원장보는 원장이 임명한다. 이들의 임기는 3 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법에서 정한 사유로만 해임될 수 있고, 임명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해임하게 된다. 원장의 이익과 금융감독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직무를 대행하는 부원장이 금융감독원을 대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 모두는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명권자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sup>51</sup>

<sup>45</sup> 「금융위원회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sup>46</sup>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업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1차적 집행기관의 역할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및 등록 신청 검토,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실태·위험 평가 및 업무보고서 접수, 법률 위반 혐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명령, 법률 위반 시 경고·주의 등 경미한 조치 부과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자본시장법」 제438조 제4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7조 제3항, [별표20]).

<sup>47</sup>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33조, 제36조

<sup>48</sup> 「금융위원회법」 제39조

<sup>49</sup> 배재홍, “금감원,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신설...이찬진호 첫 조직개편”, 경향신문, 2025. 12. 22.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221712001>

<sup>50</sup> 금융감독원, “2024 연차보고서”, 15면, 2025. 10.

<sup>51</sup> 「금융위원회법」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 4) 한국거래소

##### 법적 성격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투자상품시장 운영기관이다.<sup>52</sup> 시장 내 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로 금융투자회사 등이 주주에 해당하며,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83 개를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다.<sup>53</sup>

##### 권한 및 역할

한국거래소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보할 책무를 가진다. 구체적으로 시장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한 업무, 증권의 상장에 관한 업무, 상장법인의 신고·공시에 관한 업무, 청산 및 결제 업무를 수행한다. 동시에 산하 시장감시위원회를 통해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 등을 수행하고 해당 감시 결과에 따라 회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리며, 매매에 대한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위 업무들과 관련한 규정(상장규정, 공시규정, 업무규정, 시장감시규정, 분쟁조정규정)을 제정한다.<sup>54</sup>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국거래소 내의 독립적인 자율규제 전문기구로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공적규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공적규제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와 절차에 따라 이뤄지며 사후적 조치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자율규제는 유연한 절차에 따라 신속한 예방적 조치를 하는 데 강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시장감시위원회는 이상거래 종목 적출, 풍문수집, 지분변동신고 등 불공정거래 사전예방활동 및 시장에 대한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불공정거래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예방조치를 요구하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조사한다.<sup>55</sup> 시장감시위원회는 심리 또는 감리 결과 법에 위반한 혐의를 알게 된 경우 금융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이는 시장감시위원회의 제재 조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sup>56</sup>

##### 구성 및 임원 선임절차

한국거래소는 주요 의결기구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두고 있다.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감사위원, 시장감시위원장을 포함하여 15 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8 명의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두고 있다. 경영지원본부, 3 개 시장본부(유가증권, 코스닥, 파생상품), 시장감시본부 등 7 개 본부를 두고 있다. 2024 년 말 기준 현원은 967 명이다.<sup>57</sup>

<sup>52</sup> 「자본시장법」 제373조의2

<sup>53</sup> 한국거래소, “KRX 소개”, (접속일: 2026. 4. 1.).

<https://info.krx.co.kr/contents/KRX/01/01030000/KRX01030000.jsp?pageCount=1>

<sup>54</sup> 「자본시장법」 제373조의7, 제377조, 제378조, 제390조, 제391조, 제393조, 제402조, 제403조, 제405조

<sup>55</sup>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접속일: 2026. 4. 1.).

<https://moc.krx.co.kr/>

<sup>56</sup>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제20조

<sup>57</sup> 한국거래소 “KRX 2024년 제20기 영업보고서”, 5-6면, 2025. 4.

이사장은 이사회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금융위원회는 선임된 이사장이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거래소의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인 상근이사는 이사회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사외이사 및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주주총회 선임 의결 시 상법상 감사 선임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과 유사하게 최대주주의 발행주식총수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sup>58</sup>

시장감시위원회는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2인,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추천하는 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은 시장감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이사장과 마찬가지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sup>59</sup>

---

<sup>58</sup> 「자본시장법」 제380조

<sup>59</sup> 「자본시장법」 제402조

### 3. 금융산업 규제체계의 중립성·전문성 확보 방안

금융산업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금융상품과 거래구조가 복잡·다변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규제기관에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우리나라 금융산업 규제체계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로 이어지는 **다층 구조를 통해 권한 집중을 지양하고 중간감독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과 감독규율을 담당하는 최고감독기관으로서, 관련 법령·규정의 제·개정 권한과 중대한 제재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한다. 금융위원회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회계 분야에 특화된 전문위원회로서, 자본시장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관련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에 속하지 않는 감독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규율에 따라 금융기관과 자본시장에 대한 검사·제재를 집행한다. 아울러 시장운영기관인 한국거래소는 산하 시장감시위원회를 통해 거래소 시장과 회원을 대상으로 자율규제와 상시 감시를 담당하고 있다.

**각 규제기구의 조직·인사 측면에서도 특정 이해관계자의 의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장치를 두고 있다.** 최고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여러 기관의 대표가 참여하는 합의제 구조를 통해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위원회 형태는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를 기반으로 다수 이해관계자의 조정을 가능하게 하며,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서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 오류 가능성을 낮추는 특징을 갖는다.<sup>60</sup> 또한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임명직 위원,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서는 임기 보장과 겸직 금지 등을 규정함으로써 외부 이해관계로부터 비교적 중립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산업 규제체계는 구조적·절차적 장치를 통해 전문성과 중립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다. 산업별로 특성과 발전 단계에 따른 차이는 존재하지만, 전력산업 역시 경제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계통의 복잡성 측면에서, 현재의 규제체계가 형성된 2001년 당시와는 현저히 다른 환경에 놓여있다. 이하에서는 금융산업 규제체계에서 도출된 중립성·전문성 확보 방안을 바탕으로, 전력산업 규제체계의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sup>60</sup> 황창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중적 성격-독립행정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 사이에서”, 166-167면,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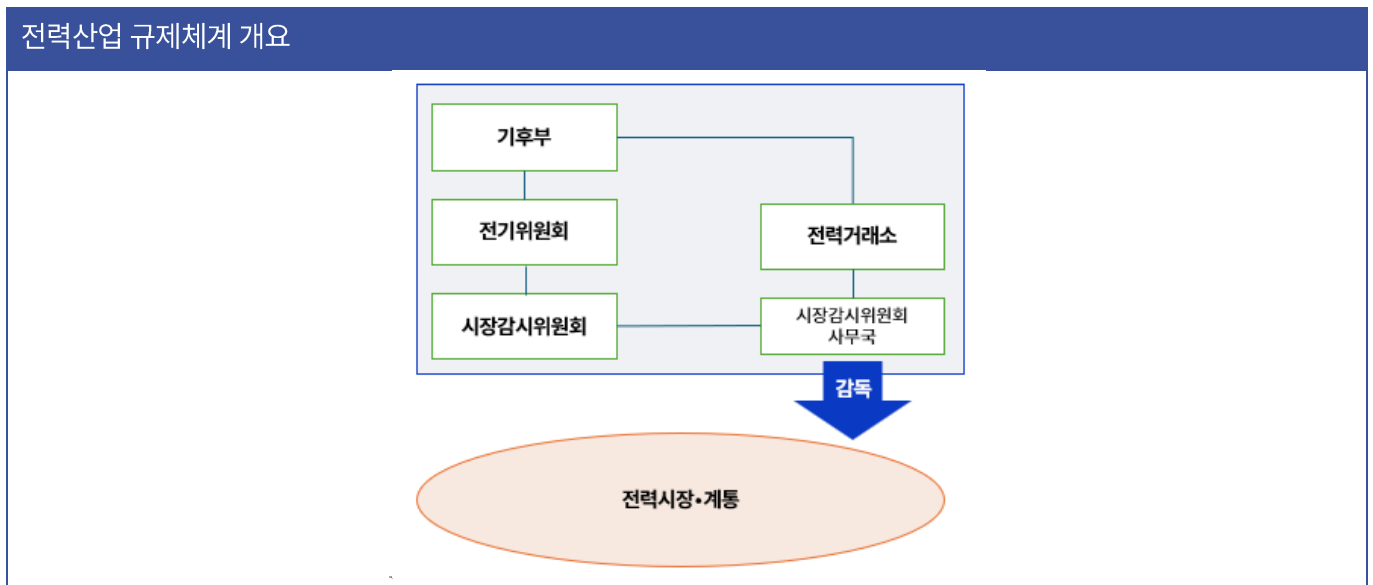
### III. 전력산업 규제체계의 중립성·전문성 확보 방안

#### 1. 전력산업 규제체계 현황 및 문제점

##### 전력산업 규제체계 개요

전력산업 규제체계는 전기사업법상 규율행위에 대한 최종 권한은 기후부에, 전력시장운영규칙상 규율행위에 대한 최종 권한은 전기위원회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분화되어 있다. 법령의 위계에 비추어 보면 전력시장운영규칙은 전기사업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하위 규정이므로, 궁극적으로는 기후부장관이 최고감독기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이다.

감독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전기위원회 산하 전력시장감시위원회가 전기사업법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위반 행위 모두를 대상으로 감시 업무를 수행하여 법·규칙 위반사항을 발견·조사한 뒤(인지·조사단계),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부장관이 제재 조치를 취하고, 규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전기위원회가 직접 제재 조치를 집행한다(심의·조치단계). 한편 전력시장감시위원회의 감시 실무는 전력거래소 내 사무국이 수행한다. 이하에서는 각 기관의 법적 성격, 권한 및 역할, 구성 및 임원 선임절차에 대해 살펴본다.



#### 1) 전기위원회

##### 법적 성격

전기위원회는 2001년 발전경쟁을 도입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전기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전기사업자 및 전기소비자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기후부 산하에 있는 조직이다.<sup>61</sup>

<sup>61</sup> 「전기사업법」 제53조

## 권한 및 역할

전기위원회는 기후부장관의 주요 결정에 앞서 심의기구로서 기능하며, 전기사업자 및 전기소비자 간 분쟁에 대한 재정을 담당한다. 망 요금(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과 전기요금(기본공급약관) 인가, 전력시장운영규칙 승인, 전력계통 신뢰도 관련 규정의 제·개정 등 전력산업 유관 주요 규정들에 대해 심의한다.

또한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전기사업법상 금지된 행위에 대하여, 기후부장관이 제재 조치를 명하거나 관련 임직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후부장관이 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의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 여부에 관하여 감시·평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역시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sup>62</sup>

전기위원회는 산하에 전력시장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전력시장감시위원회(시장감시위원회)도 별도로 두고 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전력거래소가 주관하는 전력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행사, 부당공동행위, 공정경쟁 저해행위, 전력시장운영규칙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전기사업법상 금지행위, 발전·송배전·판매 분야에서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의 적정성 등을 감시 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시장감시기준·지표 결정, 종합시장감시시스템 구축·운영, 시장감시계획 수립, 시장감시보고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며, 시장감시 및 조사결과를 전기위원회에 보고하고, 규칙위반에 대해 자율시정조치를 결정·집행한다.<sup>63</sup>

## 구성 및 임원 선임절차

전기위원회는 위원장,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인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7인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하 사무국 역시 9명으로 운영된다. 전기사업법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어, 법률·분쟁조정, 소비자보호 및 전력시장, 전력계통 및 신뢰도 분야에 대해 각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sup>64</sup>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집된다.<sup>65</sup>

전기위원회 위원은 기후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비상임위원의 자격은 전문가, 기업, 유관단체 등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 가능하며, 법에서 정하는 사유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해촉되지 않도록 신분이 보장된다. 전문위원회 위원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다.<sup>66</sup>

<sup>62</sup> 「전기사업법」 제56조

<sup>63</sup> 전력시장운영규칙 제6.2.1조, 제6.2.4조, 제6.1.3조

<sup>64</sup> 「전기사업법」 제59조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전기위원회는 법률·분쟁조정, 전기요금, 소비자보호, 전력계통, 구조개편 및 시장조성 분야에 관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026년 3월 기준 법률·분쟁조정, 소비자보호 및 전력시장, 전력계통 및 신뢰도 분야에 대해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법률·분쟁조정 위원회와 전력계통 및 신뢰도 위원회는 공석인 상황이다.

<sup>65</sup>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sup>66</sup> 「전기사업법」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시장감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 인 이내의 위원으로 이뤄지며, 위원은 전기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전력거래소 담당임원을 당연직으로 두고,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3 년으로, 1 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다. 시장감시위원회 산하에는 시장감시업무와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고 있다.<sup>67</sup>

## 2) 전력거래소

### 법적 성격

전력거래소 역시 2001 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한전)로부터 분리되어 전력시장과 계통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기관의 필요에 따라 출범하였다. 「전기사업법」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전력시장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추진함으로써 전력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설립목적으로 한다.<sup>68</sup>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는 다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들과 달리,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회원사로 구성된 전력거래소는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 법인의 의사가 결정되는 반면,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의 의사가 법인의 의사결정에 반영된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계통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사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구조를 갖는다.<sup>69</sup>

### 권한 및 역할

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전력을 거래하는 도매시장과 실제 전력이 유통되는 계통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구체적으로 전력시장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 전력거래대금·비용의 청구·정산·지불에 관한 업무, 전력거래량의 계량에 관한 업무, 전력시장운영규칙 제·개정에 관한 업무,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sup>70</sup> 위 시장의 거래참가자들은 회원 자격을 통해 회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전력거래소 운영에 관여할 수 있다.<sup>71</sup>

한편, 전기위원회 산하 시장감시위원회의 전력시장 감시업무와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을 전력거래소에 두고 있다. 사무국은 시장감시위원회의 시장감시 과정에서의 실무를 담당한다. 시장감시를 위해 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접수받고, 필요한 경우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현장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sup>72</sup>

<sup>67</sup> 전력시장운영규칙 제6.2.1조, 제6.2.2조, 제6.2.5조

<sup>68</sup> 「전기사업법」 제35조, 한국전력거래소 정관 제2조

<sup>69</sup> 기후솔루션, “전력거래소 거버넌스, 변화하는 전력시장 참여자의 대표성 강화 방안”, 4면, 2025. 9.

<sup>70</sup> 「전기사업법」 제36조

<sup>71</sup> 전력거래소 정관 제10조

<sup>72</sup> 전력시장운영규칙 제6.2.5조, 제6.3.3조, 제6.3.5조

## 구성 및 임원 선임절차

전력거래소의 이사회는 이사장과 부이사장, 비상임이사 8 명을 포함하여 11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영기획본부, 전력계통본부, 전력시장본부, 에너지시스템혁신본부를 두고 있으며, 2025 년 기준 현원은 534 명이다.<sup>73</sup>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추천하여 기후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정부대표 비상임이사 1 명은 기후부 소속 공무원으로 당연직이며, 근로자대표 및 공익대표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후부장관이 임명한다. 회원대표 비상임이사는 오로지 한전과 발전자회사 임원 중에 당연직으로 정해진다.<sup>74</sup>

<sup>73</sup>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한국전력거래소 임직원 수”, (접속일: 2026. 4. 1.).

[https://www.alio.go.kr/organ/organDisclosureDtl.do?apbald=C0246&pageNo=1&apba\\_id=C0246](https://www.alio.go.kr/organ/organDisclosureDtl.do?apbald=C0246&pageNo=1&apba_id=C0246)

<sup>74</sup> 전력거래소 정관 제36조

## 2. 전력산업 규제체계 개선 방향

### 전기위원회와 전력감독원을 중심으로 한 독립규제체계 수립

**전력산업 규제체계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주무부처인 기후부로부터 규제 권한을 분리하여 독립규제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전기위원회는 전력시장 및 계통운영과 관련된 주요 규정의 제·개정, 망 요금과 전기요금 인가, 전기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전력산업 규제의 핵심 사항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보유한 합의제 최고감독기관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동시에 전력감독원은 전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 집행기구로서 조사·검사·제재 기능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전력시장과 계통운영의 특성상 상시적인 정보 수집·분석과 조사 역량이 필수적인데, 이를 독립된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전력감독원은 전기(신)사업자 및 운영기관의 업무를 검사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제재를 집행하며, 전기위원회에 검사 결과를 보고하고 중한 제재 조치를 건의하는 구조로 운영될 수 있다. 전력거래소에 설치된 사무조직에 의존하고 있는 시장감시 기능을 본래 취지에 맞게 규제기관으로 이관하여 시장운영과 감시 기능 간 이해상충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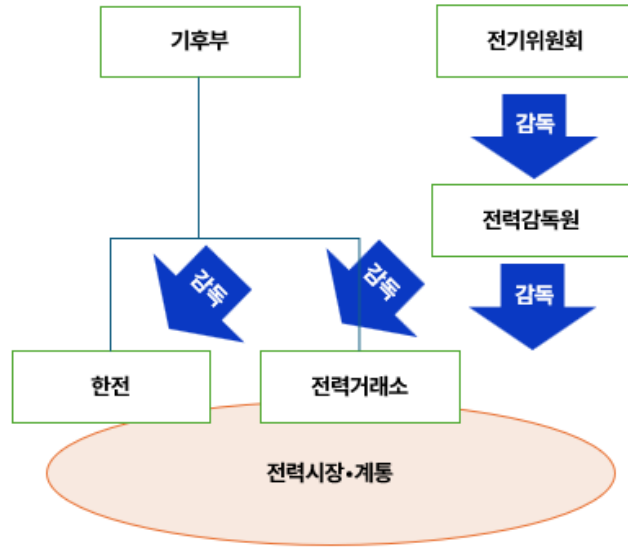
### 감독기구 구성 및 인사의 중립성 제고와 인력 확충

**독립규제체계가 전통적·지배적 이해관계자인 한전으로부터 중립적인 의사결정과 집행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구성과 인사 구조 측면에서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전기위원회 위원의 경우 현행과 같이 전원 기후부장관의 제청으로 임명·위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기관의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전기위원회를 기후부로부터 분리하여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재편하는 방안과 병행될 때 제도적 정합성을 갖는다. 전력감독원장은 전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또한 전기위원회는 현재 기후부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이 전원 비상임으로 운영되는 구조를 탈피하여, 상임위원 중심의 운영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감독기구의 전문성과 상시적 대응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3년의 임기에 대한 신분 보장에 더하여 정치활동과 겸직을 금지함으로써 중립성을 담보해야 하며, 연임은 1 회로 제한하여 권한의 장기 집중을 방지해야 한다.

**규제기관이 실질적 역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규모의 전문 인력 확보도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전기위원회 사무국 9 명과 시장감시위원회 사무국 6 명이라는 인력 규모는, 전력산업의 복잡성과 규제 수요에 비추어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다. 따라서 전기위원회 사무국과 전력감독원 구성 인력에 대한 확충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 전력산업 규제체계 개선안 개요



## IV. 결론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로 전기사업 관련 업무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시장 및 거래 방식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전력산업의 발전과 에너지 전환을 견인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독립규제체계로의 개편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국제적 정세 변화에 따라 에너지 안보 위기가 전 산업과 국민 생활의 위기로 직결되는 현재, 그 시급성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본고는 금융산업 규제체계의 발전 과정과 구조적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전력산업 규제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금융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구조 변화 속에서, 최고감독기관과 중간감독기관 간의 역할 분담, 합의제 의사결정 구조, 임기 보장과 인사 중립성 확보, 충분한 전문 인력 기반 구축을 통해 복잡한 산업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왔다.

이를 전력산업 규제체계에 적용할 경우, 가장 중요한 개편 방향은 전기위원회와 전력감독원을 중심으로 한 독립규제체계의 확립이라 할 수 있다. 전기위원회를 합의제 최고감독기관으로 격상하여 규제의 최종 의사결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전력감독원을 조사·검사·제재 기능을 전담하는 집행기구로 설계해야 한다.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내재적 이해상충을 보유하고 있는 한전 및 전력거래소에 집중된 정보와 영향력을 분산시키고, 이들에 의존하는 주무부처인 기후부로부터 독립된 규제 기능을 수행하게 할 것이다. 아울러 조직 구성과 인사 구조에 있어서도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가 도입되어야 한다.

결국 전력산업 규제체계 개편의 목적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구조적 변화에 부합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있다. 새로운 이해관계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만 전력산업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력산업 규제체계 중립성·전문성 확보 방안

발간일 2026년 4월

저자 김건영 기후솔루션 변호사 ([geonyoung.kim@fourclimate.org](mailto:geonyoung.kim@fourclimate.org))

기후솔루션은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및 올바른 에너지 전환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리서치, 법률, 대외 협력, 커뮤니케이션 등의 폭넓은 방법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실질적 솔루션을 발굴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움직임을 만들어 나갑니다.